

# 物質特許 내년 7月부터

## 立法豫告된 特許法의 正內容을

政府는 特許法을 改正, 내년 7月 1日부터 外國人の 物質特許를 保護해 주기로 했다.

特許廳이 立法豫告한 特許法 改正案에 따르면 特許保護를 받을 수 있는 對象에 음식물 및 기호물 醫藥 또는 그 調劑方法과 化學方法에 의해 製造될 수 있는 物質 및 化學物質의 用途등에 관한 發明을 追加, 物質特許를 保護해 주기로 했다.

또 特許權의 存續期間도 現行 出願公告日로부터

터 12年, 出願日로 부터 15年을 초과할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을 3年씩 각각 연장, 15年과 18年으로 하고 5年的範圍內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通常實施權設定節次를 일방적인 行政處分에서 裁定節次로 전환, 利害關係者가 特許를 내놓고도 이를 實施하지 않는 경우에 입는 不利益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強制實施權制度를 導入, 外國人이

### ● 特 許 法 ●

####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의 範圍擴大

현행법의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중에서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發明, 의약發明 또는 그 製造方法의 發明, 화학 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물질의 發明과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發明을 삭제했다.

#### 新規性喪失 例外規定補完

신규성 의제를 받고자할 때는 出願日로 부터 30日이내에 증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증명자료 제출기한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 特許權의 效力이 미치지 않는 範圍의 調整

▲수출허가등을 받고 수출화물을 선적하기 위해 수출통관면허신고를 한 화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特許權 侵害로 가치분등의 신청이 불가능하나 이를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은 의약이나 그 調劑方法은 特許를 받을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不特許事由중에서 삭제 됨에 따라 이들도 特許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의사등의 調劑행위가 금지될 우려가 있어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약이나 그 調劑方法에 特許가 허용되더라도 그 特許權의 효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調劑행위 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調劑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하도록 했다.

特許發明 不實施나 불성실하게 실시할 경우의 통상 실시권 설정절차를 현행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으로 하고있는 것을 재정절차로 전환

▲特許發明 불실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통상 실시권하여 신청시에 현행법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청구가 가능하나 權利者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거치도록하고 협의 불성립시에는 特許廳長에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特許權者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고 特許廳長이 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工業所有權審議會

# 施行

## 알아본다

特許만 出願해 놓고 이를 實施하지 않을 경우 이를 無效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特許法侵害에 대한 벌칙도 강화, 現行 5年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벌금의 下限線을 規定했다.

立法豫告된 改正내용 간추려 紹介한다.

〈編輯者註〉

議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통상실시권 재정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 대가와 그 지급방법시기를 기재도록 하고 재정등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도록 했다.

▲통상실시권의 재정을 받은 자가 실시대가를 지급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을 때는 그 재정의 효력을 상실 토록했다.

### 特許權의 存續期間 延長

▲현행법의 特許權의 존속기간은 出願公告日登録日로부터 12년으로하고 出願日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하여 왔으나 이 기간을 出願公告日(登録日)로부터 15년으로 하고 출원일로부터 18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했다.

▲發明실시를 위해서 타법령에 의한 허가등록 등 절차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大統領令으로 정함)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審查前置제도 마련

거절사정 불복항고심판 청구사건에 원활한 처리와 出願發明의 신속한 權利化를 위해 거절 불



복 抗告審判이 청구된 出願이 일정기간내에 보정될 경우는 당해사건을 거절 불복항고심판으로 진행시키지 않고 당초 審查한 審查官에게 再審查토록 하고 再審查결과도 거절되는 경우에만 抗告審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制度를 마련했다.

### 國際出願 節次 改善

1984년의 PCT(特許協力條約) 총회에서 확정된 개정조약 내용을 반영키 위하여 出願의 번역문 제출대상에서 出願書(서지적사항) 번역문을 삭제하고 特許管理人 선임없이도 최초번역문에 한하여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 侵害罪 強化

特許權 侵害罪에 대한 벌칙이 현행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규정했다.

### 부 칙

▲이 法은 1987年 7月 1日부터 실시한다.

▲이 法 시행전에 설정된 特許權과 이 法 시행전에 特許出願되어 설정되는 特許權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法 시행전에 청구한 特許의 不實施의 경우 연장실시 또는 처분·소송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 ● 商標法 ●

### 使用權 設定 要件

▲현행법의 통상사용권이란 명칭을 통상사용권과 전용사용권의 복합적 효력이 있는 사용권이라는 명칭으로 표기 규정했다.

▲商標사용의 자유화 정책에 따라 통상사용권의 설정요건으로서 현행법에서 요구하고 있는指定商品의 품질의 동일성보장 기준을 삭제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商標 사용권 설정이 가능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유 商標權의  
사용권 설정절차로서 商標權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商標權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 通常使用權의 取消 및 抹消

통상사용권 설정요건인 지정상품의 품질의 동  
일성 보장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관련규정 위  
반시 취소 또는 말소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 商標登録의 取消事由

▲현행법의 취소사유중 商標權者가 타인이 상

표를 사용하는 것을 륙인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  
우등을 취소 사유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와 輸出商品에만 사용케 하는  
경우는 취소사유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輸出商  
品에 사용케 하는 경우도 취소사유로 했다.

▲商標權者가 품질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商  
標使用權者의 商標 사용이 품질의 오인혼동등  
소비자보호를 해할 경우에는 당해 商標權을 취  
소하는 등 商標權者의 商標權利義務를 강화했다.

#### 부 칙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法 시행당시에 설정 등록된 商標使用權은  
이法에 의해 설정 등록된 것으로 한다. <※>

## 工所權 用語 37個 審議 確定

### 86年度 第1次 工業所有權用語審議會서

- ◎…… 工業所有權 用語 醇化 審議委員會는 지난 4月 11日 大韓辨理士會 會議……◎
- ◎…… 室에서 86年度 第1次 委員會를 개최하고 42個 用語중 37個 用語를 審議……◎
- ◎…… 確定했다. 審議·確定된 用語는 다음과 같다. ………………◎

순화 대상용어	구분	심의 확정어 및 뜻	순화 대상용어	구분	심의 확정어 및 뜻
철 부(凸部)	×	불록한 부분	평치차(平齒車)	○	평치차(Spur gear)
체 부(縮付)	×	조여붙임(빼고붙임이 가 능함)	포(布)	×	배, 천
체 좌(締着)	×	조여붙이기(빼고 붙임이 불가능함)	포 설(布設)	○	깔아놓는다
추 지(樞支)	×	회전 가능하게 저지하는 것(pivoting)	하 방(下方)	×	밑, 아래쪽
축제수(軸繼手)	○	축이음	하 연(下緣)	×	밑(아래) 가장자리
총합(衝合)	×	맞붙이기	해 서(解舒)	×	풀어 해침
취 부(取付)	×	붙이기(빼고 붙임이 가 능함)	현 장(懸裝)	×	매달아놓(두)기
취 좌(取着)	×	붙여 고정함	협 장(挾裝)	×	끼워놓기
축 쇄(側鎖)	○	결사슬(side-chain)	협 지(挾持)	×	끼워둠
치 차(齒車)	×	톱니바퀴, 치차(Gear)	협지부(挾止部)	×	끼운 부분
탄 비(彈飛)	×	튀기다	호 상(弧狀)	×	활모양
탈 하(脫荷)	×	짐을 내리다(벗기다)	혼 채(混在)	×	섞여있음
투 공(逆孔)	×	투시구멍	확 개(擴開)	×	넓힘
파단강도(破斷強度)	×	절단(파괴) 강도	활봉상(丸棒狀)	×	둥근 막대현상
팔자상(八字狀)	×	팔자형상(모양)	활상대판(環狀臺板)	×	둥근판
판 후(板厚)	×	판 두께	회 동(回動)	×	회전운동
팽 축(膨縮)	×	늘이고 줄임	회동기부(回動起伏)	→	회전운동에 따라 상하로 움직임
편 이(偏移)	×	치우치게 옮김	횡 형(橫型)	×	가로틀
			종 형(縱型)	×	세로틀

註: ○ 대상용어와 심의확정어를 다같이 사용한다. × 심의확정어만 사용한다. → 뜻만 확정시킨다.